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58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안상훈 · 김 건 · 윤영석  
윤재옥 · 김종양 · 배준영  
박성훈 · 박덕흠 · 안철수  
한지아 · 박형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성이 함께 존재함.

그럼에도 일반 가정에서 마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등 부적정한 폐기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해당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적절한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마약 등이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신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상호 및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위탁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2. 제품명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용량 또는 개수
5.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6.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이라는 문자
7. “전문의약품”이라는 문자
8. 성상(性狀)
9. 효능·효과
10. 용법·용량

11. 폐기 방법

12.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의            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u>총리령으로 정하는</u>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            -----            -----            -----<u>다음 각 호의</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                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                자의 상호 및 주소(위탁제조                한 경우에는 수탁제조소의 명                칭과 주소를 포함한다)</u></li> <li>2. <u>제품명</u></li> <li>3. <u>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u></li> <li>4. <u>중량, 용량 또는 개수</u></li> <li>5. <u>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포                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도                록 정한 사항</u></li> <li>6. <u>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                이라는 문자</u></li> <li>7. <u>“전문의약품”이라는 문자</u></li> <li>8. <u>성상(性狀)</u></li> <li>9. <u>효능·효과</u></li> <li>10. <u>용법·용량</u></li> </ol>

<p><u>&lt;신 설&gt;</u> <u>&lt;신 설&gt;</u>  ② (생 략)</p>	<p><u>11. 폐기 방법</u> <u>12.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현행과 같음)</p>
---	--